

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

[V]신규발급, []재발급 (요쪽)

실습생 인적사항	성명	김실습	생년월일	990909	
	휴대전화번호	012-3456-7890	학교명	00대학교 또는 00평생교육원	
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	실습기관명	00복지관	실습기관 관리번호	2020-000-0000	
	기관 주소	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, 메가벤처타워 404호		전화번호	02-786-0845
	실습 지도자명	이지도	사회복지사자격번호 (취득일자)	제2-0000001호 (2020. 01. 01.)	
실습기간	실습 기간	2020년 4월 1일 ~ 2020년 4월 30일			
	실습 시간	총 160시간 (총 20회, 1일 평균 8시간)			

실습기관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 [별표1]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,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0년 5월 1일

기관실습 지도자 : **이지도 (서명자본인)**

기관실습 실시기관 : **00복지관**

**기관
직인**

교육기관 및 세미나교수	교육기관 유형	[V]오프라인 / []온라인	교육기관명	00대학교 또는 00평생교육원
	실습세미나 교수명	박교수	학과명	사회복지학과
실습세미나	실습세미나 교수 취득학위 (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)	[V]학사, [V]석사, []박사	교육기관 전화번호	02-084-5786
	실습세미나 기간	2020년 3월 2일 ~ 2020년 6월 30일		
	실습세미나 횟수(시간)	총 15회 (30시간)	대면방식 세미나 횟수(시간)	총 15회 (30시간)

교육기관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 [별표1]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에 의해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,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0년 7월 1일

실습세미나 교수 : **박교수 (서명자본인)**

학과장 : **정학과장**

**학과장
직인**

한국사회복지사업협회장 귀하

재발급 사유	※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사유 기재 바랍니다.
[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]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[별표1]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(제3조 관련)	
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: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	
② 기관실습 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	
③ 기관실습 시간 :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.(단, 2020.1.1.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)	
④ 실습세미나 :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며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	
⑤ 실습세미나 교수 :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후	

[메모:1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1
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.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,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	
[메모:2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2
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신규발급 시 '신규발급'에 표시하고, 최초 발급 후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 시 '재발급'에 표시	
[메모:3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2
주민등록번호 앞자리(6자리) 표기 필요	
[메모:4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2
실습생의 실습 진행 당시 소속 교육기관명	
[메모:5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2
실습기관 선정 시 부여받은 '실습기관 관리번호' 기재 ※미선정 기관에서 실습 진행 시 실습 인정 불가	
[메모:6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3
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상단에 기재된 자격번호와 하단에 기재된 자격증 취득일자 기재	
[메모:7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3
총전법 대상자: 120시간 이상 개정법 대상자: 160시간 이상 사회복지현장실습은 1일 4~8시간 진행됨에 따라 총 횟수와 1일 평균 실습시간 기재 필요 ※오기재 또는 미기재 시 재발급 및 추가 서류 제출 필요	
[메모:8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3
실습지도자 서명 시 전자파일 삽입은 불가하며 직접 작성 필요 ※서명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보류 및 재발급 필요	
[메모:9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3
기관실습 실시기관 직인은 전자파일 삽입 불가하며 담당자 직접 날인 필요 ※직인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보류 및 재발급 필요	
[메모:10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4
실습세미나 교육기관의 교육 유형에 표시 필요하며, 교육기관의 유형과 실제 교육 방식 유형이 상이할 경우 교육 방식 유형에 표시 필요	
[메모:11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4
실습세미나 교육기관명 기재 필요 실습생 인적사항의 학교명과 상이할 수 있음	
[메모:12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4
실습세미나 교수의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취득학위 표시 필요하며, 허위기재 시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자의 자격증 취소 처리 등 조치 예정	
[메모:13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4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습세미나 회당 2시간 이상씩 총 15회, 30시간 이상 진행 필요 실습세미나 횟수(시간) 기재 시 총 횟수는 15회 이상, 시간은 30시간 이상 기재되어야 함	
[메모:14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4
대면방식 세미나 횟수 기재 필요하며 오프라인 교육기관은 15회 이상, 온라인 교육기관은 3회 이상 진행 및 기재 필요 시간은 회당 2시간 이상씩으로 산정하여 기재 필요	
[메모:15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4
실습세미나 교수 서명 시 전자파일 삽입은 불가하며 직접 작성 필요 ※서명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보류 및 재발급 필요	
[메모:16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5
실습세미나 진행 교육기관의 '학과장 직인' 필요하며, 전자파일 삽입 불가 ※학과장이 없을 경우 총장 직인 또는 교육원장 직인 날인 필요 ※직인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보류 및 재발급 필요	
[메모:17]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팀	2021-04-19 17:15